

□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5. 8. 31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5. 8. 31
- 라. 의안번호 : 제2005 - 44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○ 인터넷 및 전자입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사입찰업무 처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입찰참가자에 대한 수수료(건당 1만원)조항을 삭제함.
(안 별표1의 6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동 개정조례안은 세외수입 확대방안으로 입찰참가에 따른 참가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오던 것으로 입찰참가신청 방법이 종전의 수기에서 전자입찰제도 시행으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폐지하려는 것임.
- 또한, 동 입찰수수료에 대하여는 지역건설업체의 부담경감을 이유로 그 동안 관련업계 및 협회로부터 수차례 폐지건의가 있었던 사항임.

○ 현재까지 도내 20개시군중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유리한 창원, 마산, 양산, 진주, 진해, 김해시 등 6개시가 폐지하였으며, 군부에서는 함안군만이 폐지하였음.

○ 동 수수료는 거창군 조례로 수수료율을 결정한 것으로 수수료 결정시에는 당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으로 자체 원가분석 자료에 의하면 총원가는 109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.

○ 또한, 2005.10.12 감사원으로부터 저자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속히 폐지토록 하라는 감사처분 요구 사항이 통보된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.

○ 그러나 거창군의 입찰참가수수료 수입이 2004년의 경우 550백만원으로 군전체 수수료 수입중 28.6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원발굴 노력이 필요함.

- 연도별 입찰참가수수료 징수현황

회계연도	수수료수입 총액	입찰참가 수수료	점유비율
2004	19억 2천만원	5억 5천만원	29%
2003	13억 3천만원	2억 3천만원	18%
2002	12억 8천만원	1억 7천만원	14%

5. 참고자료

- 행정자치부장관 수수료조정 권고(2001. 8)
 - 전자입찰제도는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행 입찰 건당 5,000원부터 30,000원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징수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전자입찰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조정

- 경상남도 권고사항(→전시장·군수 : 2002. 1)
 -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입찰참가수수료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또는 대폭인하토록 권고함.

- 입찰참가수수료 징수관련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통보(행자부:05.10.12)
 - 전자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속히 이를 폐지토록 지도감독 철저 요구